
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제출 안내문

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8조제2항에 의거, 모든 방송사업자의 당해연도 재산상황을 제출받아 6월까지 공표하고 있습니다. 해당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재산상황 제출 사항에 따라 '10회계연도 재산상황을 작성·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관련 법령>

○ 방송법

- 제98조제2항(자료제출) : 방송사업자는 매년 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제108조제1항제26호(과태료)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26.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

□ 대상사업자

- (1) 지상파방송사업자(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포함)
- (2) 종합유선방송사업자
- (3) 위성방송사업자(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포함)
- (4) 방송채널사용사업자
- (5)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

□ 제출기한 : 2011년 3월 31일(목)까지

□ 제출자료(공통)

- (1) 재산상황 제출서 1부
- (2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등 별지서식 1부
- (3) 연결감사보고서 1부
- (4)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1부
 -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 의무가 없는 주식회사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갈음

□ 유의사항

- (1) 『(1)재산상황 제출서』와 『(2)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등 별지서식』은 반드시 붙임의 『회계정보입력가이드』를 참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회계정보 분석시스템(<http://fias.kcc.go.kr>)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(2) 『(3)연결감사보고서』와 『(4)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』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(3) 2개 이상의 권역을 가진 종합유선사업자의 경우 손익계산서, 방송 매출액명세서 및 영업통계 서식은 권역별로 각각 작성하며, 그 외 대차대조표 등의 서식은 법인 전체 값을 본사가 입력하고 그 외 권역의 대차대조표 등의 서식은 모두 “0”의 값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제출처 및 문의안내

- (1) 제출처 : (110-777)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
시장조사과 시장분석팀 이연진 (02-750-2653)
- (2) 문의 : 회계정보 분석시스템 입력 관련 기술 사항 : 이정재(02-750-2655)

2011. 03. 11.

방 송 통 신 위 원 회